

## 2020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2차 추가공모 FAQ

<2020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사업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총 정리하였습니다. 지원신청서 작성 시, 아래 Q&A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9. 3.)

순	구분	Q&A
1	지원신청자격	<p>① <b>부득이한 사유로 공연장 등록을 하지 못한 채 운영하고 있는데, 미등록공연장이더라도 지원신청을 할 수 없을까요?</b></p> <p>⇒ 아쉽게도 미등록공연장은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현행 공연법상 무대시설 및 방음시설을 갖춘 공연시설이라면 모두 공연장 등록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본 사업에서는 등록공연장만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지난 추가공모에 한해 미등록공연장의 등록 전환 기회를 제공하였기에, 이번 사업공모는 등록공연장의 공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연자 및 스태프, 관객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공연하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p> <hr style="border-top: 1px dotted #000;"/> <p>② <b>지난 6월, 1차 추가공모를 통해 1천만 원을 지원 받은 공연장입니다. 이번 공모에도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b></p> <p>⇒ 네, 가능합니다.                      1차 추가공모는 코로나19로 인한 민간 공연장의 피해 경감을 위해 공연장 운영비를 긴급 지원한 사업이며, 이번 2차 추가공모는 민간 공연장의 프로그램 기획·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다만 기존 사업 선정단체의 경우 운영 경비 상한액이 다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2	지원내용	<p>③ <b>지원을 신청하려는 공연장에서 주로 하고 있는 공연이 기초 공연예술 분야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b></p> <p>⇒ 공연 분야에 대한 질의사항의 경우, 임의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단체에서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공모 안내문에 최소한의 판단기준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공모 안내문을 살펴봐주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은 심의 기준 가운데 '기초 공연예술에 대한 기여도' 항목에 대한 심의위원의 평가의견에 따라 결정됩니다.</p> <hr style="border-top: 1px dotted #000;"/> <p>④ <b>지원유형 두 가지 중 제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헛갈립니다.</b></p> <p>⇒ <u>유형①</u>은 1) 2020년 3월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사업공모에 선정된 28개 공연장과 2) 2020년 기준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공간 운영 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연장이 해당됩니다.  <u>유형②</u>는 1)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 신청단체와 2) 2020년 6월 1차 추가공모를 통해 1천만원을 지원 받은 241개 공연장이 해당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유형별 예시가 공모 안내문에 나와 있으니 각 유형에 따른 신청 가능액과 예산 편성 시 유의사항도 함께 확인해주세요.</p>

순	구분	Q&A
		<p>⑤ <b>사업기간 동안 진행해야 하는 최소 공연 횟수가 따로 있나요?</b>  ⇒ 1회 이상의 공연을 하시되 별도의 기준 횟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예산 대비 사업계획의 적정성은 주요한 심의기준이므로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객석 거리두기, 방역조치 등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p>
3	지원신청서 작성	<p>⑥ <b>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10월 이후의 공연을 계획하더라도 실제 공연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됩니다.</b>  ⇒ 하루하루 상황이 달라지고 있어 계획을 세우시는 데 여러 가지 고려하실 점이 많을 줄로 압니다.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지원신청 단계에서는 10월 이후 공연이 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계획해주시고, 혹여 코로나19로 인해 공연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추후 별도의 사업 운영 지침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p> <hr/> <p>⑦ <b>운영 경비를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운영 경비는 어떻게 구분 하나요?</b>  ⇒ 운영 경비란 공연장을 운영하는 데 매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상근 운영인력 인건비, 공연장 임차료, 공공요금 등을 말합니다.</p> <hr/> <p>⑧ <b>피난안내도는 무엇인가요?</b>  ⇒ 피난안내도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도면으로,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내에 관람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설치 방법 등은 아래 주소의 공연법 시행규칙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공연법 시행규칙) <a href="http://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09089&amp;lsNm=%EA%B3%B5%EC%97%B0%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amp;bylNo=0001&amp;bylBrNo=00&amp;bylCls=BE&amp;bylEfYd=20190625&amp;bylEfYdYn=Y">http://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09089&amp;lsNm=%EA%B3%B5%EC%97%B0%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amp;bylNo=0001&amp;bylBrNo=00&amp;bylCls=BE&amp;bylEfYd=20190625&amp;bylEfYdYn=Y</a></p> <hr/> <p>⑨ <b>공연자 안전교육 방법이 궁금합니다.</b>  ⇒ 공연자운영자는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연자의 경우, 공연 전 1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공연자 안전교육은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a href="https://safety.kbrainc.com/main/index.jsp">https://safety.kbrainc.com/main/index.jsp</a>)를 통해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공연법 시행령) <a href="http://www.law.go.kr/lumLsLinkPop.do?lspttninfSeq=67980&amp;chrClsCd=010202">http://www.law.go.kr/lumLsLinkPop.do?lspttninfSeq=67980&amp;chrClsCd=010202</a></p>

순	구분	Q&A
		<p>⑩ 지원신청서 붙임 '확인서', '서약서', '확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 (방법1) 신청단체의 전자서명 혹은 전자도장이 있을 경우 해당 이미지 파일을 서명란에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방법2) 해당 페이지를 출력하여 직접 서명 혹은 단체 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지원신청서 내에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p>
4	필수 제출자료	<p>⑪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대장 두 가지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 네, 두 가지 모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경우 부동산이 아닌 법인 등기부를 제출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인지 확인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p> <p>⑫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과거에 종료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따로 재계약 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연장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서 그대로 제출해도 괜찮을지요?  ⇒ 임대차 계약 관계가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3개월(6~8월) 간의 부동산 임차료 납부내역을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⑬ 공연장 운영실적을 증빙할 자료 수가 많은 편인데, 각각의 파일을 첨부하면 될까요?  ⇒ 제출하실 실적 증빙자료가 많은 편이라면 개별 파일을 첨부하시는 것보다는 한글 혹은 워드 프로그램에 포스터, 팸플릿 등 제출하실 자료를 순서대로 첨부하시어 하나의 파일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⑭ 제출자료는 어디에 첨부해야 하나요?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서 작성 페이지의 [첨부파일] 탭에 모두 첨부해주시면 됩니다.</p> <p>⑮ MacBook을 쓰고 있어 파일을 첨부했을 때 파일명의 자음과 모음이 분리되어 나타납니다.  ⇒ 파일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p>
5	보조금 정산	<p>⑯ 이번 공모사업은 e나라도움을 통해 정산할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 정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이번 추가공모는 코로나19로 인한 소극장의 피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신속한 지원이 우선시되는 사업이기에 e나라도움을 통한 정산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 종료 후 당초 계획 대비 실제 예산 집행내역을 요청드릴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순	구분	Q&A
6	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 (NCAS)	<p>⑰ 주관기관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선택했는데, 지원사업 목록에 사업명이 보이지 않습니다.</p> <p>⇒ 주관기관 선택 창 하단에 노란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민간소극장 긴급지원TF'를 선택하셔야 사업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p>
		<p>⑱ 주관기관을 '민간소극장 긴급지원TF'로 맞게 선택했는데 사업명이 여전히 지원사업 목록에 보이지 않습니다.</p> <p>⇒ 이 경우 로그인 하신 아이디가 개인 회원으로 가입하신 아이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사업은 개인이 아닌 단체만 지원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체 계정이 없는 상태라면 단체 회원으로 먼저 가입하신 뒤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p>
		<p>⑲ 신청개요에 실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지정해야 하나요?</p> <p>⇒ 사업기간은 '2020-10-01~2020-12-31'로 설정해주시면 됩니다.</p>
		<p>⑳ 지원신청서 제출을 마쳤는데 내용을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p> <p>⇒ 지원신청 마감일 이전까지는 지원신청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시스템 접속 후 '나의 지원신청현황'에서 지원신청서를 클릭하면 제출하신 지원신청 내용을 불러 오실 수 있습니다. 팝업창 우측 상단의 '회수' 버튼을 누르시면 수정 가능하며 수정하신 뒤에는 다시 '최종제출'을 해주셔야 정상 접수가 되는 점 유의해주세요.</p>
		<p>㉑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사용에 문제가 있습니다.</p> <p>⇒ 시스템 관련 이용 문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577-8751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p>